

의안번호	제 62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월 1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4
----------	-----

제출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수목원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입장료 유료 징수를 위한 조항 및 내용 신설 >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반영(안 제2조)
- 기존 제6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무료) 조항 삭제
- 수목원 입장권 매표시간에 대한 문구 반영(안 제6조)
- 수목원 시설사용료에 대한 조항 분리 반영(안 제7조)
- 수목원 입장료 및 재료비 징수가능 대상 명시(안 제8조)
-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에 대한 내용, 세부대상자 명시(안 제9조)
- 입장 요금표 게시에 대한 내용 반영(안 제10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을 포함한다)을 지니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유료입장객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2항 중 “입장시간”을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의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 정하며,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목원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민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동행 1명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수목원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
17. 수목원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단체입장료에 준함
2. 연구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단체 입장료에 준함

3.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말한다)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다음날까지 입장할 때: 개인의 경우 단체입장료에 준하고 단체의 경우 단체입장료에서 1천원 추가 할인

제10조(요금표 등의 게시) 입장 요금표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lt;신설&gt;</p>	<p>&lt;현행과 같음&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li> <li>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li> <li>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을 포함한다)을 지니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4.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li> <li>5. “단체”란 유료입장객이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li> </ol>
<p>제2조(위치)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p>	<p>제3조(위치)</p> <p>&lt;현행과 같음&gt;</p>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일원에 둔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미  
동산수목원의 진흥실시계획을 5  
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  
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산림과학  
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미동산  
생태관, 방문자센터, 난대식물원,  
온실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  
다)의 각종 시설을 개방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수목원내 수목유전자  
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와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개원과 휴원)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  
고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식물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공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휴원일 중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개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01>

1. 1월 1일
2. 설날

제4조(도지사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5조(개원과 휴원)

<현행과 같음>



- 3. 추석
  - 4.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5. 그 밖에 도지사가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
- ② 수목원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원하는 것이 부적합 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나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람 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관람과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 ② 수목원의 입장시간은 오전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과 입장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사용료) 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의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 정하며,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신설>

제9조 <신설>

제8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목원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민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과 숲사  
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  
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  
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  
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  
지법」에 따른 아동

14.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  
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수목원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  
민

17. 수목원 입장일 현재 「주민  
등록법」 제6조에 따라 수목  
원 소재지(청주시 상당구 미원  
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단체입장료에 준함

2. 연구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단체입장료에 준함

3.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말한다)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다음날까지 입장할 때: 개인의 경우 단체입장료에 준하고 단체의 경우 단체입장료에서 1천원 추가 할인

제10조 <신설>

제10조(요금표 등의 게시) 입장요금표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과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6.08.01>

제11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현행과 같음>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취한 자,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단,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수목원과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8.01>

1. 수목,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킥보드 타는 행위, 배드민턴·야구·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5. 자전거를 타는 행위
6. 종교의식과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
7.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제12조(행위의 제한)  
<현행과 같음>

- 8.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 9. 음주, 취사, 소란을 피우는 행위
- 10.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하는 행위

11. 그 밖에 관람객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①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사전에 연구소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2. 특정 기관·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제13조(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연구소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전문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조경 식재와 조경 관리
4. 수목원 조성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7.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강사료 지급)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수목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자에게 원상복구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현행과 같음>

제15조(강사료 지급)

<현행과 같음>

제16조(손해배상)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발췌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20., 2005. 6. 30., 2007. 7. 4., 2007. 12. 28., 2008. 10. 31., 2009. 8. 11., 2010. 3. 10., 2011. 5. 9., 2012. 1. 26., 2017. 4. 28.>

1. 국민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비용추계서 및 자원 조달방안

## □ 비용추계서

### ○ 입장료 징수를 위한 발권시스템 구축

- 미동산수목원 발권시스템 구축 : 11,000,000원 정도

<산출근거>

내 용	수 량	단 가	견적금액
<b>미동산수목원 발권시스템 구축</b>			
<b>1. 발권장비</b>	<b>1식</b>		<b>3,130,000</b>
- 발권용 컴퓨터 : 삼성전자, i5-8500 헥사코어 win10 pro, 모니터(24")	1	1,200,000	1,200,000
- 발권용 프린터 : TECB452, 열전사 감열프린터, 자동커팅기 포함	1	1,650,000	1,650,000
- 카드/현금영수증용 프린터 : 열전사 감열프린터(sam4s)	1	200,000	200,000
- IC카드리더기	1	80,000	80,000
<b>2. 발권프로그램 부분</b>			<b>4,000,000</b>
- 발매용 프로그램			
- 현금 및 카드발권			
- 정산 및 관리자전송기능			
- 관리용 프로그램			
- 각종 정산서 및 통계기능			
<b>3. 발매용 입장권 및 카드용지</b>			
- 입장권 용지	<b>100,000</b>	<b>25</b>	<b>2,500,000</b>
- 전면칼라 후면2도 감열용지			
- 카드영수증용지	<b>1박스</b>	<b>60,000</b>	<b>60,000</b>
- 감열용지 후면 약관			
<b>Amount</b>			<b>9,690,000</b>
<b>VAT</b>			<b>969,000</b>
<b>Total Amount</b>			<b>10,659,000</b>

## □ 자원 조달방안

### ○ 충청북도 추경예산 편성

- 소요예산 : 11,000,000원 정도(도비 100%)

※ 조례, 규칙 개정 도 의회 심의시 협의 병행